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제청권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경찰청장으로 변경 등〉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0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br>                   |    |
| [참고] 특정직공무원의 분류 .....  | 14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07. 19.
3. 회 부 일 : 2024. 07. 2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7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자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에서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하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계급정년연장 및 징계(강등·정직) 절차,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 징계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경유 절차를 삭제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부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7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6조의2(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법」 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년) ① ~ ③ (생략)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1.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2. 제30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는 경우

제7조(임용권자) ① -----  
-----  
-----제청으로-----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  
-----.



다른 임용권의 일부(3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의 임용권)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항).<sup>1)</sup> 해당 임용제청권·임용권의 주체인 소속 장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외청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제청권자는 외청이 소속된 부처의 장관이 아닌 해당 외청의 청장을 의미하고 있음.<sup>2)</sup>

그런데, 특정직공무원의 경우는 그 담당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인사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sup>3)</sup>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특정직공무원으로 특별법인 「경찰공무원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총경의

---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2)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인 국세청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국세청장'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함.

3) 특정직공무원의 분류는 참고자료 참조.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4)</sup>

다른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인사특별법에서는 그 임용권자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특정직공무원 임용권자 관련 규정>

| 법 률      | 규 정                                                                                                                                                                                                                                                                                             |
|----------|-------------------------------------------------------------------------------------------------------------------------------------------------------------------------------------------------------------------------------------------------------------------------------------------------|
| 「검찰청법」   |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br>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 「소방공무원법」 | 제6조(임용권자) 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br>②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br>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군인사법」   |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br>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br>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
| 「교육공무원법」 |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4) 「경찰공무원법」

-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자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에서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하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계급정년 연장 및 징계(강등·정직) 절차,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 징계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경유 절차를 삭제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입법취지를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헌행법과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 구분(절차)               | 헌행법                                                                                               | 개정안                                                                                 |
|----------------------|---------------------------------------------------------------------------------------------------|-------------------------------------------------------------------------------------|
| <b>총경 이상<br/>임용권</b> | ·청장(해경포함) 추천 - <u>행안부장관(해수부장관)</u>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                                             | ·경찰청장·해경청장의 제청<br>* <b>장관 제청권 삭제</b><br>·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위해양<br>경찰위에 부칠 수 있음       |
| <b>계급정년<br/>연장</b>   | ·경무관 이상<br>▶ <u>행안부장관(해수부장관)</u> - 국무총리 -<br>대통령 승인<br>·총경·경정: 국무총리·대통령 승인                        | ·경정 이상: 국무총리 - 대통령 승인<br>* <b>장관 경유 삭제</b><br>·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위해양<br>경찰위에 부칠 수 있음 |
| <b>징계절차</b>          | ·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직, 경정 이상의 파<br>면·해임<br>▶ 징계위 의결- 청장(해경포함) 제청 - <u>행안<br/>부장관(해수부장관)</u> - 국무총리 - 대통령 | · <b>장관 경유 삭제</b><br>·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위해양<br>경찰위에 부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국회는 1991년 치안본부를 내무부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제34조제1항(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경찰법」을 제정하여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경찰행정의 내무부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조치였다는 점,<sup>5)</sup>

5) 이석연 전 법제처장, “경찰국 신설, 헌법적으로 용납 안 돼…‘법치 일방통행’이자 민주화의 퇴행”, 경향신문 (2022.7.26.) 참조

소방청의 경우 경찰청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임에도 「소방공무원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임용 제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소방청을 포함한 17개 외청의 경우도 소속 부처 장관을 거치지 않고 해당 청장이 직접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으므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임용 제청권은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sup>6)</sup>.

다음으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는<sup>7)</sup>,

행정안전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은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 이래 유지되어온 인사권한으로서,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맞춰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에서도 경찰청장에게는 추천권만 부여하고 경찰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으로서 장관 제청권을 유지해 왔다는 점,

경찰은 군(軍)과 같이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이 예상될 경우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통합방위사태 선포의 경우 군과 통합방위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경찰과 군의 인사제청권자인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방부장관만이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

---

6) 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7) 행정안전부 의견 참조

건의의 의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국가조직 전체적으로 인사체계와 연계된 국가방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sup>8)</sup>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정무직공무원 1명을 제외한 6명이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찰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

결론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의 주체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특별법, 해당 직무의 특수성, 임용권자의 소관 사무에 대한 직무관련성 및 이해도 수준, 국내 정치체제의 제도적 여건 등 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 업무의 중립성·독립성 및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8) 「통합방위법」

제11조(경계태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령권자”라 한다)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안 심사 시 해당 개정안들이 함께 논의·조정되어야 할 것임.<sup>9)</sup>

개정안에 대한 기관 의견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음.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지휘는 해수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며, 인사 운영은 기관 고유의 업무로 해양경찰위원회가 개별 인사 운영까지 심의·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인사의 공정성과 탄력성 확보를 위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저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불수용 입장임.

해양경찰청은 총경 이상 임용 시마다 국무총리의 판단과 위원회 자료 준비로 인한 행정력 소비로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며, 인사의 적시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임.

---

9)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각각 제2201987호),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990호) 등이 발의된 상황임.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은 다른 외청과 달리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경계  
태세 발령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 기관으로 인사책임이 국가안위 및 존  
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인사 운영의 자율성보다는 정부조직  
체계 내에서의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국가경찰위원회의 현재 구  
성으로는 경찰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들 들어 불수용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44 |

## 참고 특정직공무원의 분류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국가정보원 직원·경호공무원 등
- 계급,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국가공무원법의 특례법)으로 규정
  -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 특정직공무원의 분류

| 구 분        | 분 류                                                                                                               | 근거 법률                            |
|------------|-------------------------------------------------------------------------------------------------------------------|----------------------------------|
| 법 관        | • 대법원장-대법관-판사                                                                                                     | 법원조직법 제4조, 제5조                   |
| 검 사        | • 검찰총장-검사                                                                                                         | 검찰청법 제6조                         |
| 외 무 공무원    | • 고위외무공무원(공사급 이상 직위)<br>• 외무공무원<br>* 외교통상직렬,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로 구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서관급 이상 직위는 직렬 미구분                 | 외무공무원법 제2조, 제2조의2                |
| 경 찰 공무원    | •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11개 계급)                                                                  | 경찰공무원법 제3조                       |
| 소 방 공무원    | • 소방총감-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11개 계급)                                                          | 소방공무원법 제3조                       |
| 교 육 공무원    | • 교원<br>-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교장(원장), 교감(원감), 수석교사, 교사<br>- 대학 : 교수, 부교수, 조교수<br>• 조교<br>• 장학관, 장학사<br>•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
| 군 인        | • 장교 : 장성(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대령, 중령, 소령), 위관(대위, 중위, 소위)<br>• 준사관 : 준위<br>• 부사관 : 원사, 상사, 중사, 하사             | 군인사법 제3조                         |
| 군무원        | • 일반군무원 : 1~9급(9개 계급)                                                                                             | 군무원인사법 제3조                       |
| 국 가 정보원 직원 | • 특정직 직원 : 1~9급(9개 계급)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                     |
| 경 호 공무원    | • 경호공무원 : 1~9급(9개 계급)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 헌 법 연구관    |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br>*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임                                                                             |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19조의2              |

※자료: 2022 공무원 인사실무 P.5